



# 성라이커터 국제집단, 성라이커터 화공 (상해) 유한공사 VS 화치 (짱지아강) 화공 유한공사, 쉬지에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 42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3)沪高民三(知)终字第93号
판결 일자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1. 성라이커터 국제집단, 2. 성라이커터 화공 (상해) 유한공사		
원심피고(상소인)	1. 화치 (짱지아강) 화공 유한공사, 2. 쉬지에		
참조 법령			
영업비밀	SP-1068 제품의 생산공정, 가공기술, 배합 등		
키워드 (Keyword)	동일함(相同), 실질적으로 동일함(实质相同), 미국 ITC 조사, 결석재판(缺席判決)		

###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성라이커터 국제집단은 SP-1068 제품의 생산공정, 가공기술, 배합기술 등의 상업비밀을 가지고 있고, 성라이커터 화공 (상해) 유한공사(이하 ‘성라이커터 상해공사’)는 성라이커터 국제집단의 관련 기술에 대한 중국 독점 허가 사용권자이다.

원심 피고 쉬지에는 원래 성라이커터 상해공사의 직원으로, 원심 원고들의 상업비밀을 잘 알고 있다. 쉬지에는 성라이커터 상해공사를 사직 후 피고 화치 (짱지아강) 화공 유한공사에서 일했다.

쉬지에는 화치공사에 원심 원고들의 상업비밀을 누설하여, 화치공사가 SL-1801 제품을 생산하고, “알킬페놀 열가소성 수지생산의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명칭으로 발명특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심 원고들이 법원에 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심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것이다.

### 03 주요 쟁점

---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

양 당사자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양 당사자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다르다.

---

### 04 판결 요지

---

기술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원심 원고의 SL-1068 제품과, SL-1801 제품이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본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였고,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였으므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

### 05 Key Point

---

본 사건은 중국과 미국 (ITC 분쟁) 양국에서 진행된 기술비밀 관련 분쟁이다. 또한, 제품 관련 기술비밀의 세부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예상 된다. 그래서인지, 본 사건이 최고법원이 공포한 2013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례의 다섯 번째 임에도 판결 원문을 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판례의 중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